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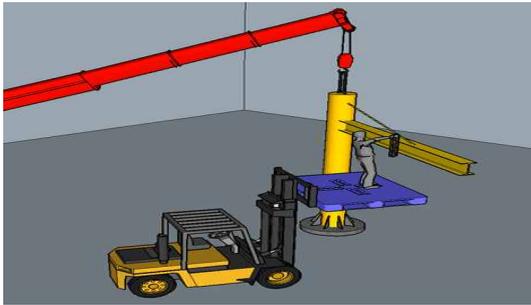
# 파렛트 위에서 지브크레인 철거 작업 중 떨어져 사망

## 재해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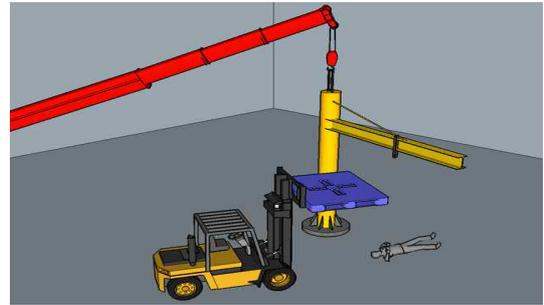
‘18년 ○. ○○. ○○ 소속 근로자 피재자 AA(남, 66세)가 (주)□□내 생산1팀 작업장에서 지브크레인 철거작업을 위해 지게차의 포크에 끼워진 파렛트 위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 후크의 슬링벨트를 지브크레인의 받대에 체결하는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(h=2.5m) 사망한 재해

## 재해 관련 사진

< 슬링벨트 체결작업 >



<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짐 >



## < 재해발생 상황도 >

### 재해 발생 원인

- 지게차 주용도 외의 사용
  -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경우,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지게차를 주용도 외로 사용
-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
  -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
- 개인보호구 미착용
  -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구(안전대 및 안전모)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

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지게차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
  - 사업주는 추락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,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함
-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
  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거나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
-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
  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